

전통시장 인정신청 검토결과

□ 신청시장 개요

- 시장명 : 신중양시장(1962.11.2. 개설,상인회장 최순오)
 - ※ 현재 등록구역인 중앙시장과 등록예정지인 신중양시장 상인회장 겸임
- 소재지 : 서울 중구 황학동 442번지 일대
- 규 모 : 토지면적 4311.36m²,건물연면적 9136.54m²,영업장면적 2795.10m², 점포수 91개
- 시장특성 : 식품유통,농·수·축산물 판매 등 종합시장

□ 관련규정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(정의),
같은법 시행령 제2조(전통시장의 기준)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(전통시장의 인정절차)

□ 검토사항

- 도매업,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
 - 영업점포수가 91개소로 적합
-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(도로제외)
 - 해당구역의 토지면적이 4,311.36m²로 적합
-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 - 전체 91개 점포 중 용역점포는 12개소(일반음식점)로 적합
-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여부
 - 전체 상인 91명 중 77명이 동의(85%)함에 따라 적합
- 토지소유주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여부
 - (※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주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함)
 - 전체 토지소유주 77명중 40명이 동의(52%) 함에 따라 적합
 - 전체면적 4311.36m²중 동의받은 소유주의 면적이 2414.76m²으로 2분의 1이상이어서 적합
- 건축물 소유주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여부
 - 전체 건축물 소유자 65명중 40명이 동의(62%)함에 따라 적합

